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 538

발의연월일: 2009. 8. 28. 발 의 자: 김인식의원 외 7인

1. 제안이유

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 변경 및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사용료 변경 및 추가 감면대상를 명시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,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

나. 합 의 : 법무통계담당관실, 복지정책과와 합의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8조제1항제1호 "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"를 "「국민기 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증명서 소지자"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"제5호"를 "제10호"로 하며, 같은 조 같은 항에 "제5호부터 제9호"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자
 - 6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·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·특수 임무공로자 유족증 소지자
 - 7. 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
 - 8. 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
 - 9. 65세 이상의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
- 제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②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
- 별표 1 제1호가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(제7조제2항 관련)

1. 사용료

가. 주민편의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이용 그브 | 사용료 | |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|
| | 이용 구분 | 성 인 | 청소년 | 어린이 | 비고 |
| | 월이용권 | 35,000 | 25,000 | 15,000 | 월 |
| 수영장 | 1회 이용시 | 2,000 | 1,500 | 1,000 | 1일 |
| | 월이용권 | 45,000 | 30,000 | 무료 | 월 |
| 체력단련실 | 1회 이용시 | 3,000 | 2,000 | 무료 | 1일 |
| | 월이용권 | 35,000 | 25,000 | 早显 | 월 |
| 찜질방 | 1회 이용시 | 2,000 | 1,500 | 早显 | 1일 |
| 자유이용권 (수영장+체력 단련실+점질방 | 월이용권 | 60,000 | 40,000 | 15,000 | 월 |
| | 1회 이용시 | 4,000 | 3,000 | 1,000 | 1일 |

^{※ &}quot;성인"이란 20세 이상 자를 말한다.

^{※ &}quot;청소년"이란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.

^{※ &}quot;어린이"란 13세 미만 자를 말한다.

신・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생 략)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 권자 2~4 (생 략) _〈신 설〉 | 제8조(사용료의 감면) ① (현행과 같음) 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증명 서 소지자 2∼4 (현행과 같음) 5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소지 |
| _〈신 설〉_ | 자 6.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·특수임무공로 |
| <u>〈신 설〉</u> | 자 유족증 소지자 7. 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꿈나무사랑 하드 소지자 |
| _〈신 설〉_ | 8. 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 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 리지증 소지자 |
| _〈신 설〉_ | 9 <u>. 65세 이상의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</u> 신분증 소지자 |
| <u>5.</u> (생 략) | <u>10.</u> (현행과 같음) |
| <u>〈신설〉</u> ② (생략) | ②시장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한다. ③ (현행과 같음) |

관 련 법 령

【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】

- 제5조 (등록 및 결정) ①참전유공자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.26>
 -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유공자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. <개정 2002.1.26>
 -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또는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신청서류에 따라 이 법 제2조제2호 각목의 1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의한 참전유공자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. <신설 2002.1.26, 2007.1.3>

[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]

제58조 (고궁 등의 이용지원)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국가유공자"는 "특수임 무수행자"로, "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"은 "특수임무부상자증, 특수임무공로자증, 특수임무부상자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유족증"으로 본다.
[전문개정 2008.12.24]

【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】

- **제9조(꿈나무사랑카드)** 시장은 12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을 출산한 세대에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 - 1.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업체 이용 시 할인
 - 2.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 시 전액면제 또는 할인
 - 3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]

- 제4조(자원봉사마일리지제 운영 등) ①시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발급한다.
 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.
 - ③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.
 - 1. 대전광역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개인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
 - 2. 대전광역시에서 지정하는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이용료 할인
 - 3. 자원봉사활동 인증칭호(별표 1) 부여
 - 4. 우수 자원봉사자 포상 및 선진지 견학기회 부여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찬 성 의 원 서 명

| 의 원 명 | 서 명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|----|
| 对 01 只 | - AND | |
| 0) 77 51 | T72 | |
| 9 70 176 | and | |
| 76 24 73 | 7-1/2 | |
| 45082. | May 2 | |
| S F F | 64 mmo | |
| a of hi | 347 | |
| 3 3 2 2 1 | 7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| | | |

대전광역시기성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

2009. 9. 8 교육사회위원회

I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8. 28 김인식의원외 7
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8. 31

다. 상 정 일 자 : 제184회 제1차 임시회

제5차 교육사회위원회

상정, 질의, 심사, 원안가결

II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복지여성국장 조정례)

1. 제안이유

○ 시민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사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감면대상를 추가 명시함(안 제8조 제1항)
 -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 유공자증 소지자
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증·특수임무공로자증·특수임무부상자 유 족증·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 소지자
 - 「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
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

- 「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
- 65세이상의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소지자
-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이용료에 한해 100분의 10을 경감 신설(안 제8조 제2항)
- 별표1 제1호가목중 자유이용권을 추가하여 할인코자함.

Ⅲ. 검토의견 (전문위원 : 궘태환)

-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와 출산장려·양육을 위한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 그리고 사회에 헌신한 자원봉사 마일리증 소지자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감면 혜택을 주어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 주고
- 가임기 여성의 신체적 특수성으로 수영장이용에 제약을 받는 여성회원에게 이용료의 일정비율 감면을 통해 여성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며
- 또한, 주민편의시설인 수영장, 체력단련실, 찜질방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추가함으로서 본 시설물을 사용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는데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Ⅳ. **질의·답변 요지**: 생략

V. **심 사 결 과** : 원안가결

Ⅵ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